

2026-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

1. 교내장학금 신청대상 : 8학기 이내 재학생(초과학기자 신청 불가)

※ 선출직 간부장학금: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

※ **교내장학금 이중수혜 및 오(誤)지급 시 학생지원과로 반환해야함**

2. 교내장학금 추천기간

| 구분 | 신청/추천기간 | | 장학금 종류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| 1학기 | 2학기 | |
| 감면 | 1월 (등록금고지전) | 7월 (등록금고지전) | 학업우수, 이공계인력육성, 체육특기, 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외국어우수, 고시(최종합격), 간부, 가족사랑 등 |
| 지급 | 3월 중 | 9월 중 | 체육특기, 공로, 고시, 봉사(지정/일반), 간부 등 |
| | 4월 중 | 10월 중 | 보훈, 한마음, 북한이탈주민, 간부, 가족사랑, 지방자치발전, 인천대사랑(도전/열정) 등 |
| | 5월 중 | 11월 중 | 우수신입생(생활비), 공로, 고시, 외국어우수 등 |

※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해당 장학금 신청/추천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

※ 상세 기간 및 내용은 대학홈페이지 > 인천대소식 > 공지사항 > 장학금 > 교내장학금 확인

3. 교내장학금 신청 유의사항

○ 감면 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

- 감면 장학금 승인 시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 반영되므로 부모님 회사 등록금 지원 여부 등 확인
- 감면 장학금 승인 후 **등록금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**
※ 감면장학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장학금 포기신청서 제출

○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

-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승인 및 지급받을 수 있음(감면의 경우 예외)
-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전액 완납되어야만 지급

○ 교내장학금 감면·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
- 예1) 학업우수장학금 감면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외국어우수장학금으로 변경 불가
- 예2) 외국어우수장학금(B) 수혜 후 외국어우수장학금(A) 변경 불가

○ **교내장학금 수혜자가 교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**

-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금 포기 후 수혜 가능

※ 교내장학금 추천 변경은 불가하므로 교외장학금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수

◦ 교내장학금 포기하고 교외장학금 선택하는 학생은 '교내장학금 포기신청서' 를 공문으로 제출하며, 포기한 교내장학금은 반복 불가

○ **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의 장학금 신청**

- 휴학생 : 장학금 신청 불가

- 휴학 예정자 : 장학금 신청 후 **등록금 납부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** 하여야만 장학금 감면·지급 가능

※ 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 학적> 개인학적조회> 등록 : 해당학기 '완납' 확인

◦ 간부 및 봉사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 하더라도 장학금 감면/지급이 불가능(수혜 시 반납)

○ **전과한 학생 : 전과한 첫 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**

○ **교내장학금 반납**

-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장학금 반납

○ **교내장학금 추천 관련 공인외국어성적은 입학 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**

○ **직전학기 수강한 모든 과목이 이수인정(Pass/Fail) 과목인 경우**

- 외국어우수, 공로, 인천대사랑, 가족사랑 등: 성적이 Pass로 평점평균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 적용

◦ 2025-1학기 12학점 이수 후 평점평균 3.5 취득 & 2025-2학기 현장실습 12학점 이수 후 성적이 Pass인 경우, 2025-1학기 성적 적용
 ◦ 수강신청 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/Fail로 기재되는 경우, 산출된 평점평균 적용
 → 직전학기 현장실습 12학점 PASS 및 OCU 1과목 3.5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로 반영

○ **직전학기에 교환학생이었던 경우, 장학금별 최종 추천기간까지 성적 미산출시 성적이 산출된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**

○ **자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(2019-1학기 신(편)입생부터)**

○ **다년장학금의 경우도 매 학기 장학금 신청 필수**

- 보훈, 북한이탈주민, 한마음, 고시, 수시-우수, 입학.단과수석, 우수신입생(생활비성) 등의 장학금 대상자도 **학생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필수**

○ **미추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**

- 신청내역이 「학과/부서대기」로 되어 있는 경우 학과/부서에서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학과/부서에 문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

4. 장학금별 유의사항

○ **외국어우수장학금**

-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 제출
- 공인어학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마감일까지 남아있는 학생
(예시) 학과 추천기간이 2026.01.12. ~ 01.16.인 경우 유효기간이 추천 마감일(2026.01.16.)까지 남아있는 학생

○ **인천대사랑장학금(도전/열정)**

-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I · II · 다자녀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

○ **봉사(일반)장학금**

-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I · II · 다자녀 신청자
 - ① 근무기간 : 정해진 개월 근무
 - ② 근무시간 : 09:00 ~ 18:00까지
 - ③ 토요일, 공휴일 근무 불가
 - ※ 교내봉사 시작일 기준, 다음달 15일 전후로 장학금 지급
 - ※ 매월 100시간까지 입력 가능(단, 하루 8시간 이상 입력 불가)

○ **공로장학금**

- 기간 내 수상한 실적에 대하여 신청(대회개최 관련공문 및 수상실적(상장)을 첨부)

◦ 1학기 : 전년도 6월 ~ 당해연도 5월 수상내역
 ◦ 2학기 : 전년도 12월 ~ 당해연도 11월 수상내역
 ※ 단, 수상은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상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
- 장학금액

| 구분 | 단체 | 개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국제 각종대회 입상자 | 70만원 | 100만원 |
| 국내(전국규모) 각종대회 입상자 | 30만원 | 50만원 |
|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에 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| 해당없음 | 100만원 |

- 휴학 중 취득실적 : 당해학기 복학생은 휴학학기 중에 취득한 수상내역도 인정

◦ 2025-1, 2025-2학기 휴학 중 국내(전국규모)·국제대회 수상 후 2026-1학기 복학한 경우
: 2025-1, 2025-2학기 중 취득한 실적으로 2026-1학기에 신청가능

-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(2026.3월 수상부터),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체육특기장학금

- 제출서류 : 경기실적증명서

○ 보훈장학금

- 제출서류 : (본인/배우자)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,
(자녀/손자녀*)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
- 직전학기 평균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재입학 대상자(자녀 등)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재입학 당해학기에 재발급 받아서 제출
- 8학기 동안 수혜 가능하며, 종전 대학에서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도 전체 수혜 횟수에 포함(본인 및 배우자는 제한없음)
- 직전학기 평균성적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도 수혜 횟수는 추가됨

○ 간부장학금

- 1차 추천 : 타 등록금성 교내장학금을 받지 않는 간부장학생
- 2·3차 추천 : 1차에 미추천된 간부장학생
 - ※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경우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- 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간에 직책 수행을 종료할 경우(휴학, 자퇴, 제적 등) :
장학금 전액 반납
- 장학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휴학, 질병 등 부득이 직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:
수업일수 1/3선 이내 장학생 변경 (학생지원과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)
 - ※ 당해학기 교환학생 간부장학금 수혜 불가
 - ※ 선출직 간부장학금 8학기 초과자 지급가능
 - ※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요망)

○ 가족사랑장학금

- 2명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, 학생신청일 기준 신청학생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

완납하고 재학 중이어야 함

- 성적기준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
-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 제출

○ 한마음장학금

-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종합장애등급 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(구) 장애등급 1, 2, 3급)

○ 북한이탈주민장학금

- 지원대상 :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(한국국적 취득자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제출서류

| 본인 | 자녀 |
|---|---|
| ① 학력인정증명서*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① 학력인정증명서*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자녀명의 ④ 부모(택1)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

*** 학력인정서류**

| |
|---|
| ○ 북한학력(전문대졸이상) : 학력인정증명 공문 ○ 북한학력(고등학교) : 학력인정증명서 ○ 국내고등학교 졸업 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○ 검정고시 합격자 :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○ 해외고등학교졸업(예정)자 : 아스포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(예정)증명서 |
|---|

- 성적기준 : 직전 2개 학기 연속 평균성적 70점미만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, 장학금 지원 불가
- ※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며, 타대학에 신·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
- 지원범위 :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
- 유의사항
 - 2022년 이후 신·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미수강시,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(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참고)
 - 법령개정으로 신규대상자가 된 재학생의 경우, 법령개정 전에 종료된 학기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불가

교내장학금 신청/추천 오류 사례

| 연번 | 장학금명 | 오류내용 | 점검사항 |
|----|-----------|--|---|
| 1 | 가족사랑 | 장학금 신청자 본인과 가족(형제자매 등)을 동일하게 입력한 경우 |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학번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 |
| 2 | | 첨부서류 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|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"*" 처리 |
| 3 | 외국어우수 등 | 등록금성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을 전액 수혜 받은 이연복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| 복학 전 등록금성 장학금(등록금 전액) 수혜 여부 확인 |
| 4 | 인천대사랑 등 |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한 경우 |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I·II·다자녀 유형 신청 후, 소득구간 확인 |
| 5 | 공로 | 지역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| 전국 또는 국제대회 수상내역만 인정 |
| 6 | 학업우수/간부 등 | 감면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납부 이후 장학금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|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감면 장학금 포기가 불가하므로, 등록금 납부 전 장학금 감면 내역 확인 |

